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준식 전화 042-470-4040 / 팩스 042-470-4240	보 도 자 료 2023. 6. 1.(목)

제목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망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오늘, **'22. 9. 26.경 대전 유성구 소재 현대아울렛 대전점(연면적 118,444㎡, 지상 5층, 지하 2층)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를 비롯하여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함

❍ 수사한 결과,

- 이 사건은 아울렛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폐지 방치, 화재수신기의 상시 연동정지** 등으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 실패, **주차장 내 가연성 의류박스 적치 등의 관리부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임을 확인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 협의체의 합동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의록을 위조하여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 등도 확인되었음

❍ 대전지검은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소속	피고인 (직책)	죄명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 운영	A○○ (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B○○ (지원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사문서위조 · 행사
	C○○ (지원팀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차장법위반
F○○㈜ 소방·시설관리	D○○ (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화재예방법위반
	E○○ (소방팀장)	
	F○○ 주식회사	화재예방법위반

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 '22. 9. 26.경 아래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 운행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해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을 사망케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①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어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을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한 관리 부실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② 화물차 하역장 바닥에 택배기사들이 쌓아둔 폐지를 방치한 관리 부실

③ 하역장 주차면 바닥에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한 과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점검 등 미실시

○ **피고인 D○○, E○○, F○○ 주식회사**

- 고의로 소방수신기를 상시 정지시켜두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 ’22. 3.~7.경 도급사업장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들을 위조한 후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하여 **【사문서위조·행사】**

○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22. 3.~9.경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위반】**

2 수사 경과

○ ’22. 9. 26. 07:39	화재 발생(당일 15:02경 진화)
○ ’22. 9.~10.	대전시경, 사고차량 및 현대아울렛 대전점 및 서울 본사, F○○(주) 사무실 등 압수수색
○ ’22. 12.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원인 등 감정 회신
○ ’23. 3. 24.	대전지검, A○○, B○○, D○○, E○○(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대전시경 신청)
○ ’23. 3. 29.	법원, 기각(사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 ’23. 5. 2.	대전시경, 사건 송치
○ ’23. 5. 15. ~ 22.	대전지검, 피의자·참고인·유족 등 조사, 관련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 실시
○ ’23. 6. 1.	A○○ 등 총 피고인 7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박스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3 수사결과

1 폐지 · 박스 등 가연물질 적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상시 노출

- **(주의의무)** 지하주차장 내 하역장에서 화물차 엔진이 공회전할 경우 배기구 과열 및 배기가스에 의한 열축적으로 인해 주변 가연물질이 연소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고, 유사한 주차장 화재사고 이후 주차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가 있는 등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음

  ※ '22. 2. 27.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쌓아둔 상품박스 수백개.... 불이라도 난다면' 등 언론보도

- **(주의의무 위반)** 그럼에도 (1) 발화지점인 하역장 주변에 상당한 양의 폐박스 방치, (2)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인명피해 발생

' 22. 9. 19.(화재발생 7일 전) 의류박스 및 폐지 등이 하역장 주변 도크에 적치되어 있는 상황

' 22. 9. 23.(화재발생 3일 전) 의류박스 및 폐지 등이 하역장 주변 도크에 적치되어 있는 상황

' 22. 9. 26.(화재발생 당일) 07:33경 하역장 주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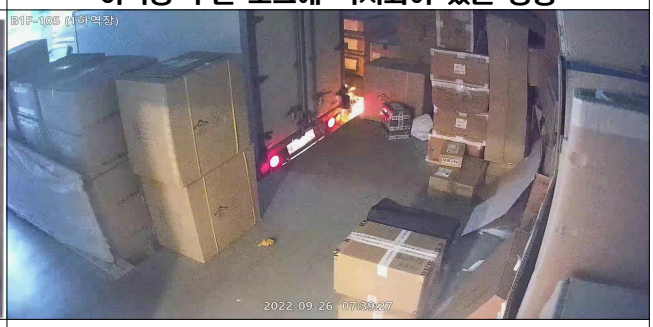

' 22. 9. 26. 07:39경 발화

발화지점인 지하주차장 1번 하역장 CCTV사진

2 소방수신기 연동기능 정지로 인한 화재 초기 진압 · 억제 실패

- **(주의의무)** 화재 발생 시 일정시간 경과 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 제연설비 등 연동된 **소방설비인 소방수신기가 상시 작동**되게 하여야 하고, 그 작동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감지기 오작동 등의 문제로 소방수신기 등 화재경보시설을 꺼놓는 업계 관행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다수

- (주의의무 위반) 그럼에도 (1)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소방수신기를 '상시 연동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하고, (2) 이를 점검, 시정하지 아니하여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번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인명피해 발생

에스컬레이터 인근 방화셔터 미작동

방화커튼 미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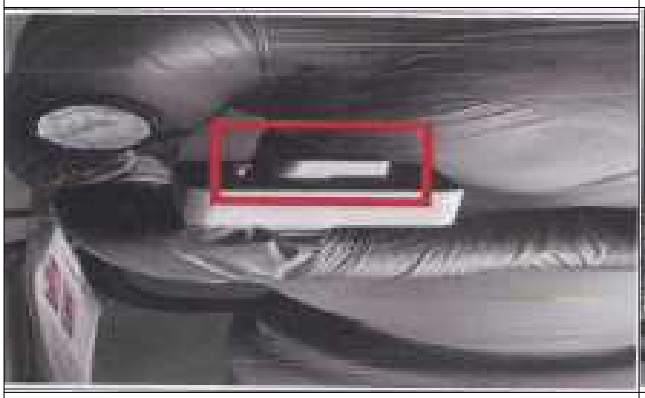

정상 동작한 스프링클러 밸브 (비교사진)

발화지점(Zone-13구역) 스프링클러 밸브 미작동

발화현장 소화설비 등 미작동 확인 현장사진

③ 안전 · 보건협의체 미구성으로 인한 관리 · 감독 공백

-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들과 합동**하여 매월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내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주의의무 위반) 하청업체들과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간협의체회의록, 합동 안전점검 결과'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소방시설 등 합동점검을 한 것처럼 꾸미고,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인명피해 발생

4 향후 계획

❍ 오늘 기소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